

EY한영 월간 Public Policy Newsletter

2026년 8월호

발행일 | 2026년 8월 31일

In Focus

- + 금감원, 감사시간 줄거나 감사보수 너무 낮으면 즉시 감리 착수 방침...감사품질 저하 위험에 제동 [\(바로가기\)](#)
- + 금감원, 자산운용사의 결권 행사 점검 결과 공개...행사율 91.8%에 반대의결은 8.2% [\(바로가기\)](#)
- + 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발표...ESG 요소 반영하고 이행 점검 명문화 [\(바로가기\)](#)
- + 중국, 세계 AI 협력기구 'WAICO' 출범...미국 중심 AI 거버넌스 구도에 새 축 형성 움직임 [\(바로가기\)](#)
- + 영국, AWS·구글·MS·오라클 '금융서비스 핵심제3자' 지정...클라우드 업체 등도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 [\(바로가기\)](#)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Contents

01	국내 업데이트	3
	1.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	
	▪ 금감원, 감사시간 줄거나 감사보수 너무 낮으면 즉시 감리 착수 방침...감사품질 저하 위험에 제동	4
	▪ 금융위,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제 개편...대형 회계법인엔 품질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5
	2. 자본시장	
	▪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 공개...행사율 91.8%에 반대의결은 8.2%	6
	▪ 금융위·거래소, 연 2회 '저PBR기업' 공개 방침...올해 11월 첫 공표	9
	▪ 금융위,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계획 발표	11
	▪ 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 대폭 개선해 투자자 보호 방침...임상 성공확률 등 구체적 수치 요구	13
	3. ESG·지속가능성	
	▪ 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발표...ESG 요소 반영하고 이행점검 명문화	15
	4. 기술·디지털	
	▪ 금감원,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사회·경영진 책임 명확화	17

02 해외 업데이트 19

1. 해외 일반

- 호주, 재무보고 체계 개편...회계·감사기준 제정기구와 감독기구 통합 20

2. ESG·지속가능성

- IAASB,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FAQ 발간...보고기업·인증인의 중요성 판단 지원 21
- 미 캘리포니아, 스코프 1·2 최초 공시 기한 11월로 연기...기업에 추가 준비기간 부여 22
- EU, 배출권거래제 개편안 발표...배출 상한 축소 속도 늦추고 무상할당 폐지 연기 23

3. 기술·디지털

- 중국, 세계 AI 협력기구 'WAICO' 출범...미국 중심 AI 거버넌스 구도에 새 축 형성 움직임 25
- 영국, AWS·구글·MS·오라클 '금융서비스 핵심 제3자' 지정...클라우드 업체 등도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 27
- 중국 스타트업, 고성능 개방형 AI 모델 '키미 K3' 출시...사이버보안·정보수집 우려도 제기 28
- EU, '고위험 AI' 규제 '27년 말 이후로 연기 확정...투명성 의무는 원안대로 8월 시행 29
- OECD, 세계 최초 양자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책임 있는 양자 기술 개발·활용 위한 공동 원칙 제시 30

03 주목할 간행물 32

- EY: Technical Line - How certain global sustainability-related reporting requirements may impact multinationals 33
- EY: CSRD Barometer 2026 33

01

국내 업데이트

금감원, 감사시간 줄거나 감사보수 너무 낮으면 즉시 감리 착수 방침...감사품질 저하 위험에 제동

In Focus

최근 외부감사 업무의 보수와 투입시간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 줄어들면”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감사인 감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힘.

7월 15일 금감원은 상장사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해 ▲2024 사업연도의 상장사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에서 발견된 미흡사례와 ▲2025년에 실시한 감사인 품질관리 감리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유함. 또한 회계법인들이 감사시간 관리체계 및 감사보수 산정체계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자체 점검할 것을 당부함.

특히 향후 감사보수와 투입시간 측면에서 감사품질 저하 위험 신호를 살펴 부실감사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할 방침인데, 이는 감사인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

금감원은 동시에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감사품질 위주의 지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금융위,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제 개편...대형 회계법인엔 품질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7월 24일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유도 방안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이번 규정 변경은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평가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감사품질 위주로 전면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힘. (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금융위, 회계 및 감사 품질 제고 방안 발표...회계부정 지시자 최대 5년 상장사 퇴출하고 감사인 선정 시 이해충돌 차단장치도 도입" 참고)

현행	개정
감사품질 우수법인 보상체계 강화	
회계법인을 회계사수 등 양적 지표 위주로 '가~라' 군으로 분류하고,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 군)만 지정감사 가능 ➡ 중견 법인은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기 어렵고 ➡ 대형 회계법인은 모두 최대 가점을 받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우려	① 회계법인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 일괄 2배 상향 ¹ ② 군 상향 특례 제도 - 품질 평가 최상위권인 중견 법인에는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지정받을 자격 부여 ² ③ 감사품질 점수 격차 확대: -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현행 가점(최대 10%) 외에도 감점(최대 10%)을 신설 - 군별 상대평가 도입
감사인 내 감사품질 감독기제 마련	
회계법인 내부 파트너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 감사품질 관리보다 단기적인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	④ '가' 군 법인에 '감사품질감독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위원회 구성: 과반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 전문가가 맡아야 함 - 위원회 기능: 사원총회부의 안건 중 감사품질 관련 사안을 사전 심의하는 등 객관적 시각에서 외부 검증·감독
상장사 등록 감사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 담당이사 인력요건 정비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등의 요건으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 경력 요구 - 대표이사: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10년 이상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7년 이상 ➡ 회계처리 경력만으로도 선임 가능함	⑤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등의 요건으로 외부감사 경력 반드시 요구 - 대표이사: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10년 이상 (단, 외부감사 7년 이상) - 품질관리 담당이사: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7년 이상 (단, 외부감사 5년 이상)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¹ '가' 군: 1천억원→2천억원, '나' 군: 100억원→200억원, '다' 군: 10억원→20억원

² 즉, '나' 군 중 품질우수법인은 (특례) '가' 군 지정함. 단, 손해배상능력을 기존보다 1.5배 더 쌓아야 한다는 조건 부과.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 공개...행사율 91.8%에 반대의결은 8.2%

In Focus

7월 6일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285곳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함. 자료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규정된 내부 지침의 세부 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배경

- 자본시장이 양적·질적¹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도 기관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주주총회 안건에 무조건 찬성하거나, 의결권 행사에 관해 형식적으로 공시하거나, 스튜어드십과 관련한 적절한 내부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운용사가 많다는 비판이 존재해 왔음.
- 이에 따라 지난 4월 금감원은 운용사들이 최근 12개월 내 한국거래소에 공시²한 내역을 바탕으로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했는지 점검하고 ▲공모운용사들은 2023년 10월 전면 [개정](#)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사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조직 내부에 적절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살펴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5월호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예고...공모 운용사는 내부 프로세스도 점검 방침” 참고)

점검 대상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 사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285개 공·사모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4만 6827건으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의결권 행사율 및 반대의결 비율은 점진적 개선 중

- 행사율: '24년 79.6% → '25년 91.6% → '26년 91.8%
- 반대율: '24년 5.2% → '25년 6.8% → '26년 8.2%
 - 그러나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이 99.8%, 반대율은 23.1%였던 것과 비교하면 운용사들이 여전히 소극적임을 알 수 있음.

안건별 반대의결 비율

-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건 유형: ▲임원 보수(11.7%) ▲정관 변경(9.2%)
▲이사·감사의 선·해임(7.2%) 순
- 반대 비율이 가장 낮은 안건 유형: 합병·분할 등의 조직 변경(2.6%)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소수주주 권한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한 일련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² 펀드별로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한 상장사 주식에 대해서는, 전년 4월부터 당해연도 3월 말 사이 해당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 등을 매년 4월 말까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함. 공시 내용은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운용사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과의 관계 등임.

안건별 반대의결 비율 (계속)

- 안건 유형별 의결권 행사 상세 현황 (단위: 안건 수, %)

안건 분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합계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0,035 (84.4%)	716 (6.0%)	153 (1.3%)	988 (8.3%)	11,892 (100%)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3,636 (83.5%)	447 (10.3%)	42 (1.0%)	230 (5.3%)	4,355 (100%)
정관 변경	10,841 (83.2%)	1,200 (9.2%)	129 (1.0%)	854 (6.6%)	13,024 (100%)
임원 보수	6,489 (75.7%)	1,006 (11.7%)	94 (1.1%)	981 (11.4%)	8,570 (100%)
결산 및 배당	4,878 (85.0%)	253 (4.4%)	66 (1.1%)	545 (9.5%)	5,742 (100%)
자본 구조 (증자·감자 등)	1,480 (84.0%)	87 (4.9%)	19 (1.1%)	175 (9.9%)	1,761 (100%)
조직 변경 (합병·분할 등)	98 (84.5%)	3 (2.6%)	3 (2.6%)	12 (10.3%)	116 (100%)
기타	1,145 (83.8%)	136 (9.9%)	25 (1.8%)	61 (4.5%)	1,367 (100%)
합계	38,602	3,848	531	3,846	46,827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

- 285개사 중 121개사(42.4%)가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 사유만을 기재함.

내부지침 공시 현황

- 285개사 중 59개사(20.7%)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의 근거가 규정된 세부 지침은 공시하지 않았음.

공모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체계 현황

- 내부 관리체계의 적정성
 - 67개 공모운용사 중 ▲18개사(26.9%)는 주주권 행사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40개사(59.7%)는 관련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개사(29.9%)가 의결권 행사 관련 업무실적¹을 KPI에 반영함.
- 의결권 행사의 충실성
 -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시 중복 기재율²은 ▲대형사는 11.6% ▲중·소형사는 31.1%였음.
-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 법상 규제 이상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자체 추가하지는 않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의결권 행사 건수, 공시규정 준수 여부, 주총 의안분석 등. 전년도에는 총12개사가 이를 KPI에 반영함.

² 내용·유형이 서로 다른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사유를 동일하게 기재한 비율. 투자자가 실제 행사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됨.

금감원은 작년 모범사례였던 미래, 교보AXA, 트러스톤, 신영은 올해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히면서, 삼성, NH-Amundi, VIP 등 3사를 올해 모범사례로 공개함. 더불어 의결권 행사사유 공시, 내부관리체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미흡사례도 함께 공개함.

향후 금감원은 업계 전반의 주주권 행사 체계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CEO 간담회와 업계 설명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행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금융위·거래소, 연 2회 '저PBR기업' 공개 방침...올해 11월 첫 공표

7월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주가순자산비율(PBR)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미흡한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세부기준(안)을 [발표](#)함.

PBR이 낮다는 것은 보유한 순자산 대비 주가가 낮다는 의미로, 거래소는 전체 상장기업의 5~10%에 해당하는 약 120~220개의 기업이 '저PBR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배경

- 일부 기업이 낮은 주가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해 순자산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 일반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 개선방안'을 [발표](#)해 주주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저PBR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번 세부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저PBR 기업 선정 및 공표 기준

- 대상: 업종별 3년(6반기) 연속²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머문 기업 공표
 -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상 11개 업종별 PBR 순위 산정: 산업별 특성에 따른 구조적 차이 고려
 - PBR 산정 방식: 순자산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사업·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총액은 공표일의 7거래일 전을 기준일로 해당 기준일을 포함한 20거래일 평균으로 산정

공표 면제특례

- 대상: 저PBR 개선계획³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하면 향후 1년(2반기) 공표 면제
 - 단, 시장별·업종별 6년(12반기) 연속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인 경우 특례적용 불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공표)

공표 시점 및 방법

- 공표 시점: 매년 5월, 11월 최초 매매거래일
- 공표 방법: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에 태그 표출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Price-to-Book Ratio: 시장이 기업의 장부가치(순자산)에 대해 몇 배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PBR이 1미만인 경우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함. 시가총액을 자본(순자산)으로 나누거나 주가를 주당장부가치(총자산·총부채)/총 발행된 보통주식의 수로 나누어 구함.

² 6반기 연속으로 기준 이하인 경우가 원칙이나,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의 PBR까지 고려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 공표 대상에 포함함. 이를 통해 일회성 PBR 상승만으로 제도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함.

³ 거래소 지침에서 별도 양식 규정 (원인분석 - 목표설정 - 개선계획 - 이행평가 등)

⁴ 12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경우가 원칙이며, 공표 대상과 동일하게 1반기만 기준 상회 시 과거 13번째 반기를 확인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이처럼 최초 공표는 올해 11월에 이루어지지만, 거래소가 간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지난 5월 기준으로 공표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의 수는 다음과 같음.

최대 공표 기업 수	•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약 220개 (코스피 130, 코스닥 90)
최소 공표 기업 수	• 특례 적용 후 잔여 기업 약 120개 (코스피 80, 코스닥 40)

거래소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자사의 과거 반기별 PBR 수치, 업종별 하위 25%, 10% 해당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또한 제도 측면에서는 PBR 등 주주가치 연관 주요 재무지표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평가항목 중 하나로 반영¹하고, 스톱워딩 코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임.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규정·세칙 개정 예고를 8월 5일부터 [개시](#)하여 8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함. 이후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이후 11월 2일 첫 공표를 추진할 계획임.

¹ 저PBR을 상장폐지 심사 발동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발동 사유로 인해 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고려요인으로 포함하는 방안

금융위,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계획 발표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6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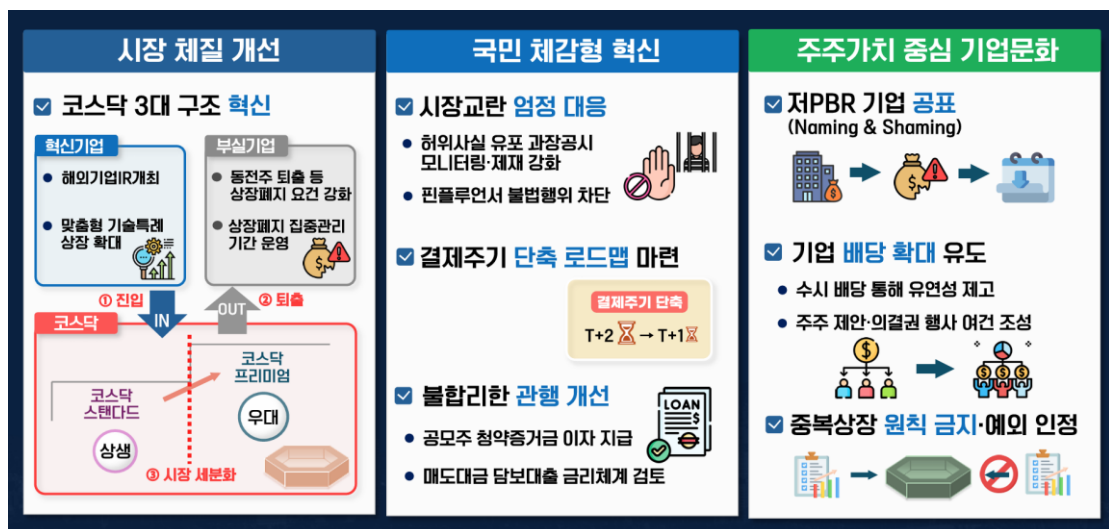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 코리아 디스카운트 ➡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 배당 증가 및 자사주 소각 확대 등 기업 행태도 주주가치 중심으로 변화
- 부동산·수도권 중심의 자금 흐름 ➡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가속화
 - 국민성장펀드: 출범 6개월 만에 14조 6000억원 승인함으로써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26년 중 금융권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규모는 150조원('26년 5월 기준 진도율 60%)
-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장기 과잉 추심관행 개선 등

향후 핵심 추진과제

생산적 금융

- 첨단산업 경쟁력 선도: 국민성장펀드 규모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12개의 첨단산업이 포함된 지원 대상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
- 지방우대금융: 지방공급 규모를 '25년 100조원에서 '28년 164조원으로 확대
- Global Best 자본시장 조성: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 등 장기투자 여건 조성 (본 뉴스레터 내 "금융위·거래소, 연 2회 '저PBR기업' 공개 방침...올해 11월 첫 공표" 및 2026년 7월호 "금융위·거래소,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위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에 의적 허용' 세부기준 마련" 참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Global Best 자본시장 조성>

출처: 금융위원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향후 핵심 추진과제 (계속)

포용적 금융

- 서민금융안정기금,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및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금융시스템 구조 개혁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세계 최선의 채무자 보호 및 범죄 예방 체계 구축
- 청년 및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융지원 강화

신뢰받는 금융

- 금융시장 안정 및 공정질서 확립: 가계부채 총량 관리, 불법 금융거래 대응역량 강화
- 금융권 낡은 관행 혁파 및 디지털·AX 혁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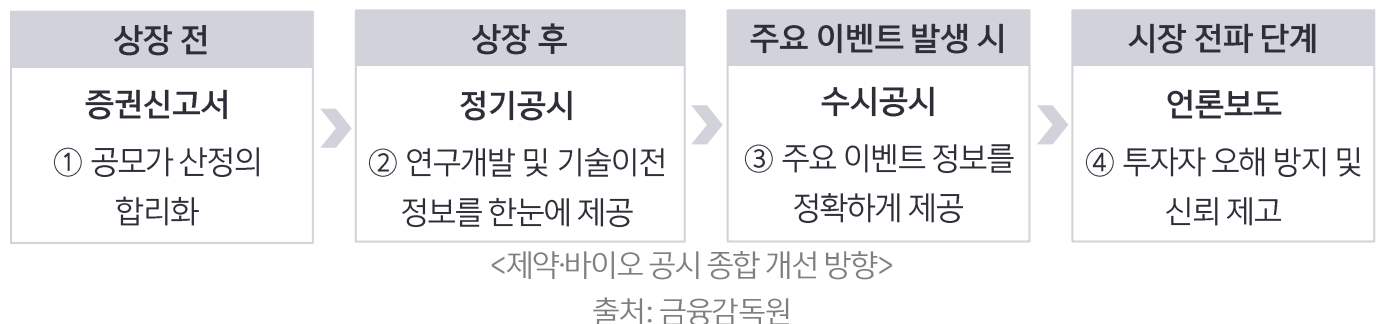
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 대폭 개선해 투자자 보호 방침...임상 성공확률 등 구체적 수치 요구

7월 30일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 투자자가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함.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외부 자문위원, 제약·바이오 업계 등과 함께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TF'를 **운영**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개선방안을 논의함.

배경

- 제약·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전문성이 높아 미래 사업 가치에 대한 다양한 가정이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침. 그러나 현행 공시는 기업별 기재 방식의 편차가 크고, 공시 정보도 신약 개발, 임상시험, 기술이전 계약 등 일반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됨.
- 최근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¹ 규모 등 연구개발 성과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보도 간 정보가 불일치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반복됨.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번 개선방안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비교가능성 및 이해도를 높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시 전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공시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상장 전) 증권신고서: 공모가 산정 시 핵심 가정 구체화

-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가정을 다음 4대 분류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설명
 - 1) **예상 시장 규모**: 전체 시장과 실제 목표시장을 구분하여 산정 근거 제시 ➔ 기업이 실제 진출 가능한 시장 규모를 사업 역량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는지 객관적 판단 가능
 - 2) **임상시험 성공확률**: 임상 단계별 성공확률 및 산정 근거 제시 ➔ 회사별 임의적인 추정 최소화, 기업 간 기재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 3) **허가·심사 리스크**: 품목 허가 과정의 주요 리스크 제시
 - 4)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 개발 단계별 일정과 비용, 자금조달 계획 제시 ➔ 투자자가 전체적인 개발 계획 파악 가능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제약·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과 판매권리를 다른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계약

② (상장 후) 정기공시: 기술이전 계약 세부내역 공개

- 기존:
 -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¹ 중심으로 공시 ➡ 과거 파이프라인의 개발 경과와 현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 기술이전 계약은 총 계약 규모만 강조 ➡ 실제 수취할 수 있는 금액보다 과대하게 받아들여지거나 계약의 실질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 발생
- 개선:
 - 연구개발 이력관리 총괄표 신설: 개발 중, 개발 완료, 개발 중단, 품목 허가 등 주요 진행 경과 체계적 관리
 - 일정 지연 시 사유와 계획 기재: 투자자가 연구개발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쉽게 파악
 - 기술이전 계약 세부 내역 기재: ▲계약금,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및 로열티 구분 기재, 각 금액의 지급 조건과 성격 함께 안내 ▲계약 상대방을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규모, 사업 역량 등 계약의 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공시

③ (주요 이벤트 발생 시) 수시공시: 전문용어 의미와 해석방법 안내 등 일반투자자 이해도 제고

- 수시공시 사항은 이번 공시 개선 방안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거래소에서 검토 중

④ (시장 전파) 언론보도: 공시와 언론보도의 일관성 확보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는 공시 통해 먼저 공개
- 언론보도는 공시 내용과 일관성 유지: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 추가하거나 공시 내용과 상이한 내용 기재 불가
 - 과장되거나 주관적 표현은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여 정보 전달
- 특정 투자자에게 정보 우선 제공 금지: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함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투자자가 기업 간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분석하고 기업 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논의 후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임. 또한 제약·바이오 상장기업과 IPO를 추진 중인 비상장기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방침임.

¹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각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 단계 및 진행 현황을 통틀어 지칭

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발표...ESG 요소 반영하고 이행점검 명문화

In Focus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 제정 10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수탁자 책임 이행 시 ESG 요소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원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체계 도입도 명문화함.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 위원회인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¹가 7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힌](#).

배경

-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16년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되었으며, '26년 8월 현재 4개 연기금, 67개 자산운용사 등 총 267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음.
-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참여기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없고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짐.
- 이에 따라 작년 12월 금융당국이 ESG기준원 및 관계부처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금융위·금감원,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추진...매년 12월 ‘이행 여부 점검결과’ 공개” 참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적용 자산군 확대

- 기존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 시로 한정하지 않고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자산까지로 적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실제 적용 범위는 각 기관투자자가 자율 결정

ESG 및 지속가능성 요소의 반영

- 수탁자 책임 이행 시 점검해야 할 핵심 경영사항 중 하나로 “재무적으로 중대한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을 명시함
-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 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에 ESG 요소를 포함함

이행점검 체계 명문화

-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참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각 참여기관은 매년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위원회는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명, 학계 인사 2명,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각 1명 등으로 구성되며, ESG기준원이 위원을 위촉하고 실무를 지원함.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반영

-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해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점검하도록 명시함

협력적 관여활동의 반영

-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함께 회사와의 대화 등 관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적 관여활동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개정 코드는 또한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투자자나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임한 활동이 자신의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지 점검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이 참여기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개정사항의 반영 여부 및 반영 계획을 제출해야 함. 개정 코드는 참여기관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관련 가이드라인(실무지침서) 또한 개정될 예정임.

한편, 작년 12월 발표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참여기관¹이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해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실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 및 의결해 12월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임. 올해 1월에는 설명회를 개최해 이행점검 절차 및 기준을 설명하고 서식 예시를 제시함. 위원회는 2026년 이행점검은 개정 전 코드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2027년 이행점검부터 이번 개정사항을 반영한 이행점검기준을 적용할 방침임.

¹ 이행점검 대상 단계적 확대: ('26년) 자산운용사·연기금 → ('27년) PEF운용사·보험사 추가 → ('28년)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추가 → ('29년) VC·서비스기관 등 전체

금감원,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이사회·경영진 책임 명확화

7월 29일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협회·중앙회¹와 함께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힌**. 이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² 등 외부 IT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IT 업무를 외부 제3자에게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배경

- 최근 금융회사들의 외부 IT 서비스(예: 클라우드, SaaS) 활용 및 IT 업무 외부 제3자 위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가이드라인(자율규제)은 판매·결제 등 일반적인 업무 위탁에 수반되는 제3자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이 현행 체계에 사이버보안·정보보호 등 IT 업무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제3자 IT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이 커짐.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3자 IT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담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위탁업무의 중요도와 위험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강화·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 이사회: '제3자 IT 리스크 관리'의 최종 책임 주체
 - 위험관리 정책 및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함
- 경영진: '제3자 IT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할 주체
 - 총괄관리부서 지정·운영: ▲안전성 확보조치³ 수립·실행 ▲각 사업부서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 현황 총괄 관리 ▲제3자 IT 리스크 현황 및 위탁계약 적정성 평가 수행의 책무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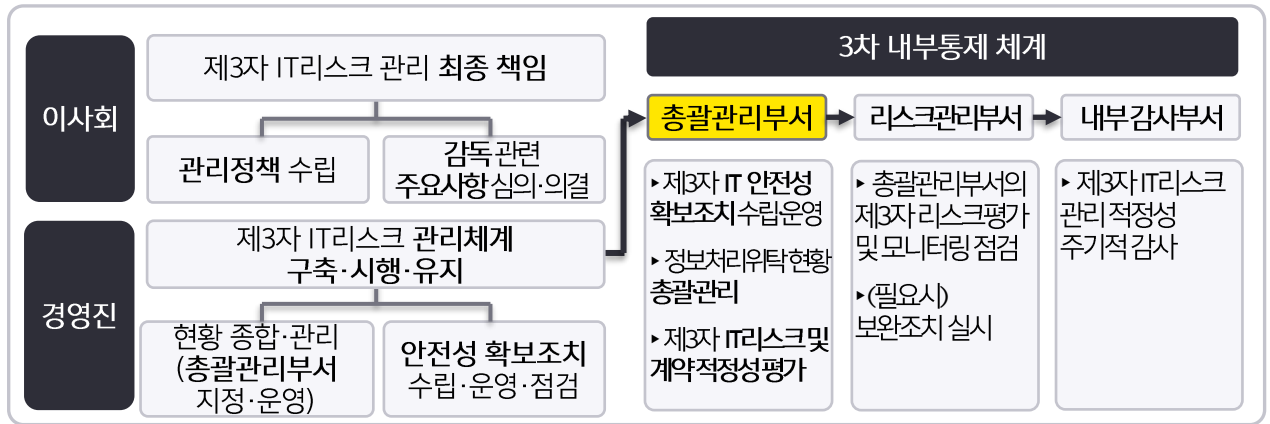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²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방식. 소프트웨어를 직접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SaaS 방식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이용 가능. (예: Microsoft 365, 인사관리서비스 SuccessFactors 및 My HR 등)

³ ① 접근 매체 위·변조, 해킹,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등에 대비한 보안 대책 ② 금융회사와 제3자 간의 전용회선 등 안전한 통신 구간 보안 대책 ③ 정보처리 시스템 장애 등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비상 대책 ④ 업무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요 자료 백업 및 백업 설비 확보 등 백업 대책 ⑤ 보안 취약점 최소화 등 보안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 3단계 통제체계 구축·운영: 총괄관리부서, 리스크 관리 부서, 내부 감사 부서로 구성된 3단계 통제 체계를 구축·운영



<제3자 IT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거버넌스>

출처: 금융감독원

제3자 IT 리스크 식별·평가·관리 구체화

- 금융회사는 제3자(위탁계약 상대방)의 재무 건전성과 업무 관련 주요 정보(제공 서비스 등)를 식별하고, 주기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점검해 관련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
 - 특히 금융회사 업무 또는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3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강화된 리스크 관리를 수행¹
- 제3자별로 IT 리스크 평가 항목과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
 - 식별된 위험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통제·경감·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이사회가 유지 여부를 결정

계약 단계별 리스크 관리 절차 체계화

- 계약 체결 전: 현장 실사 등으로 서비스 역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검증하고, 필수사항(위·수탁사간 역할 분담, 사고 발생 시 책임 관계 등)을 계약서에 반영
- 계약 기간 중: 계약 이행 현황을 정기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시스템 중단 등에 대비한 비상 대책,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백업 관리 체계, 계약종료에 대비한 출구전략 등을 마련
- 계약 종료 후: 정보 자산 반환, 접근 권한 말소, 정보의 완전한 폐기 등 후속 조치 수행

금감원과 업권별 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모범 기준 등을 제정해 오는 11월 이후 시행할 계획임. 또한, 금감원은 지난 4월 발표한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융부분의 디지털 혁신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¹ ▲정기 IT 리스크 평가 ▲비상·재해복구훈련 참여 ▲백업관리 적정성 점검 ▲대체가능수단 검토 등

02

해외 업데이트

호주, 재무보고 체계 개편...회계·감사기준 제정기구와 감독기구 통합

8월 20일 호주 재무부가 회계·감사·지속가능성 분야의 기준 제정 기능을 통합한 법정기구인 호주 외부보고위원회 (External Reporting Australia, ERA)가 오는 12월 1일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밝힌](#).

ERA는 구체적으로 다음 세 기구를 통합·일원화하여 기존 체계를 대체하게 됨.

호주회계기준위원회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AASB)

- 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담당
 - IFRS 도입·정비 및 기업 회계기준 개발

호주감사·인증기준위원회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AUASB)

- 감사기준 및 인증기준 제정 담당
 - 재무제표 감사기준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인증 등 비재무정보에 대한 인증기준도 개발

재무보고위원회 (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

- 기준 제정 체계의 최고 거버넌스 기구
 - AASB와 AUASB를 감독하고, 기준 제정 전략·방향을 수립함
(직접 기준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준제정기구를 감독)

이번 개편은 회계·감사 중심이었던 기존의 재무보고 체계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인증까지 포괄하는 통합 외부보고 체계로 전환하려는 호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기업 공시감독과 회계부정 조사, 감사인 감리 등 규제·집행 기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가 담당할 방침임.

IAASB,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FAQ 발간...보고기업·인증인의 중요성 판단 지원

6월 25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ISSA 5000'의 실무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성(materiality) 관련 FAQ를 [발간](#)함.

배경

- '24년 12월 IAASB는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위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을 공표함. (본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IAASB,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ISSA 5000' 공표... '25년 중 국내 도입 예상" 참고)
- 또한 '25년 11월에는 ISSA 5000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시 인증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IAASB, 'ISSA 5000' 적용한 지속가능성 예시 인증 보고서 공개" 참고)

이 FAQ는 지속가능성 인증 수행 시 보고기업과 인증업무 수행자(인증인)가 ISSA 5000에 따른 중요성을 어떻게 고려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크게 ▲중요성의 이해 ▲보고기업이 중요성을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 ▲인증인이 중요성을 적용할 때 고려할 일반 사항 등으로 구성됨. 특히 인증인의 중요성 적용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성적·정량적 공시에 대한 중요성 판단 ▲수행 중요성(performance materiality)¹ ▲지속가능성 정보 왜곡표시의 중요성 평가 등도 다루고 있음.

또한 FAQ는 다양한 설명과 사례를 통해 보고기업과 인증업무 수행자가 ISSA 5000에 따른 중요성 개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¹ 수정되지 않거나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가 누적될 경우 전체의 중요성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인증업무 수행자가 전체의 중요성보다 작게 설정하는 기준 수치를 의미함.

미 캘리포니아, 스코프 1·2 최초 공시 기한 11월로 연기...기업에 추가 준비기간 부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기후 공시 규제에 따른 스코프 1·2 배출량 최초 의무공시 기한이 기존 8월 10일에서 11월 10일로 3개월 연장될 방침임.

7월 27일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규제의 세부 이행기준 마련을 담당하는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정 수정안을 [공개](#)함. CARB는 규정의 일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업에 추가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최초 공시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설명함.

배경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미국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되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활동을 영위¹하는 기업에 대해 글로벌 매출 규모에 따라 다음 2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본 뉴스레터 2025년 11월호 “미 캘리포니아, '26년 시행 기후공시법 적용 대상 공개...국내 기업도 작간접 공시 부담” 참고)
- 기업기후정보책임법(SB 253): 직전 회계연도 매출 10억 달러 초과 (시행 중)
 - ▶ '26년에 공시하는 보고서부터: 직전 회계연도의 스코프 1·2 배출량 공시
 - ▶ '27년에 공시하는 보고서부터: 직전 회계연도의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 ▶ '26년에 공시하는 보고서부터 단계적 인증 의무화²
- 기후관련재무위험공시법(SB 261): 직전 회계연도 매출 5억 달러 초과 (소송으로 일시 중단)
 - ▶ 2년마다 기후 관련 재무위험 보고서를 공시 ('26.1.1.까지 보고서를 최초 공시해야 함)
- 지난 5월 20일 SB 253과 SB 261에 따른 요구사항을 실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CARB의 시행규정이 주 행정법 심사기관(OAL) 심사 단계에 [진입](#)함. (본 뉴스레터 2026년 5월호 “미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의무화 추진 지속...집행 일부 불확실성 속에도 기업들은 이미 대응 착수” 참고)
- 그러나 6월 23일 CARB는 일부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해 해당 규정을 자진 철회한 뒤 이번 수정안을 내놓은 것.

수정안은 스코프 1·2 배출량 최초 공시 기한을 연기하는 한편, SB 253 적용 여부를 가르는 ▲캘리포니아 내 사업 영위 여부와 ▲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를 기업집단이 아닌 개별 기업(entity) 단위로 평가³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함. CARB는 수정안에 대해 8월 1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검토를 거쳐 시행규정 확정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¹ 지난해 11월 업데이트된 CARB의 [FAQ](#)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활동을 영위(doing business in California)”하는 기업이라 함은 ▲캘리포니아 내에 설립되었거나 캘리포니아 내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회사의 주요 사업 및 경영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요 근거지가 캘리포니아인 경우 ▲캘리포니아 내 매출이 약 73만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등, FAQ 내 설명된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해당됨.

² ▲스코프 1·2: 2026년에 공시하는 보고서부터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으로 시작해 2030년에 공시하는 보고서부터는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 의무화 (단, 2026년에는 이미 보유·수집 중이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공시를 허용하고 법 준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인증 의무도 사실상 면제됨) ▲스코프 3: 2030년에 공시하는 보고서부터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 의무화

³ 따라서 그 계열회사 등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에도 계열회사 등의 매출액을 제외함.

EU, 배출권거래제 개편안 발표...배출 상한 축소 속도 늦추고 무상할당 폐지 연기

7월 17일 EU 집행위원회가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 상한 축소 속도를 늦추고 무상 배출권 할당 폐지 시점을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함.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부문의 무상할당 폐지 시점을 2034년에서 2038년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배경

- EU는 '05년 세계 최초로 특정 섹터들¹ 전체가 일정 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allowance)을 할당하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함.
- EU ETS는 거래기간(trading phase) 단위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는 제4기('21년~'30년)로 '30년까지의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권 할당 체계가 설정되어 있음.
 - 제1기부터 제4기까지 EU의 기후 목표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음.
 - 다만, 기업이 기후 정책 관련 비용을 이유로 탄소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로 생산지를 옮겨 전 지구적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를 일컫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위험이 높은 에너지집약적 산업에서는 배출권 일부 또는 전체를 무상할당해 옴.
- EU는 '23년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제품에도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도입해 '26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CBAM 적용 대상 품목²의 경우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하도록 함. (본 뉴스레터 2026년 5월호 "EU, 'CBAM 인증서' 가격 첫 공개... '26년 1분기 수입품 탄소비용은 톤당 약 13만원" 참고)

1. 배출권 감축 속도 조절

현행	개정(안)
• 배출권 감축 속도: 배출허용총량을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비율을 뜻하는 선형감축계수(LRF)를 '24년~'27년 4.3%, '28년부터 4.4%로 적용 ➔ 유지 시 '39년 경 신규 배출권 거의 고갈 예상	• 배출권 감축 속도: LRF를 '31년~'35년에는 3.7%, '36년~'40년에는 1.7%로 조정 • 새로운 완충 수단 도입: ▲'36년부터 고품질 국제 탄소 크레딧³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영구적 탄소 제거 활동⁴을 ETS에 통합해 이에 기반한 배출권 증량을 허용하고,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 추가적 배출 어려움 제공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현재 전력 및 열 생산, 산업 제조, 항공, 해운운송 섹터에 적용 → '28년부터는 건물, 도로운송, 소규모 산업 등의 섹터에 확대 적용(ETS2)

² CBAM 적용 대상 품목: 철강, 전력, 비료,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³ 재생에너지 발전, 산림 조성 등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제거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감축-제거량을 인증하여 발행받는 것으로 거래가 가능함.

⁴ 대기 중의 탄소나 생물에서 나온 탄소를 포집하여 수백 년 동안 저장하는 영구적 탄소 제거활동 (본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EU, '탄소 제거 인증 제도' 도입...탄소 감축-상쇄 이어 '제거' 활동 투자 촉진 기대" 참고)

2.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시점 연기

현행	개정(안)
• CBAM 적용 섹터: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26년 (-2.5%)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34년 전면 폐지 • CBAM 미적용 섹터: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산업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30년까지 유효함	• CBAM 적용 섹터: 무상할당 종료 시점 '38년까지 연기 - '28년부터 무상할당량 삭감분의 15%를 복원하고 축소 속도 완화 • CBAM 미적용 섹터: '31년 이후에도 무상할당은 유지하되, EU 역내 탈탄소화 투자와 긴밀하게 연계 - 시설 사업자는 5년마다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탈탄소화 투자계획을 제출해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무상할당분 중 20%는 5년 후 실제 투자 이행 여부 및 감축 성과를 검증한 후 지급

이번 ETS 개편안을 두고 EU의 공동 입법기관인 EU 이사회와 의회가 각각 입장을 채택한 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종 합의를 도출할 경우 입법이 확정됨.

중국, 세계 AI 협력기구 'WAICO' 출범...미국 중심 AI 거버넌스 구도에 새 축 형성 움직임

In Focus

7월 16일 중국 정부가 자국이 제안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operation Organization, WAICO) 설립 협정에 러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¹ 총 28개국이 함께 서명함으로써 29개 창립 회원국이 확정되었다고 [밝힘](#). 이날 서명식에는 유엔(U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단도 참석했으며, 같은 달 말 중국 외교부는 8개국²이 협정에 추가로 서명했다고 [밝힘](#).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AI 선도국들은 이번 협정에 참여하지 않음.

배경

- 2025년 7월 중국은 2018년부터 매년 상하이에서 개최하는 '세계인공지능대회(2025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WAIC)'에서 WAICO 설립 구상을 처음 제안하면서,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함.
 - 혁신을 위한 협력 심화를 통한 AI 혜택 극대화
 - 포용적 발전 촉진을 통한 AI 격차 해소 → 모든 개발도상국이 AI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
 -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AI의 선한 영향력(AI for Good)' 실현 → 광범위한 합의에 기반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표준·규범을 점진적으로 형성
- 한편, 중국은 G7,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AI Safety Institutes)³ 등 선진국 주도의 AI 거버넌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UN 등 기존 국제기구의 하위 조직이 아닌 새로운 정부 간 국제기구(IGO)로 설립되는 WAICO는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AI 분야의 국제 협력을 추진할 예정으로, 중국 정부에 따르면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인류 모두를 위한 유익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AI”를 실현하고자 함. 그러나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린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WAICO 창설은 (그간 AI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향후 5년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5000건의 AI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AI 발전이 새로운 기술 격차와 역사적 불공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데서 드러나듯, WAICO는 개도국의 발언권 확대와 역량 강화에 보다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음.

이처럼 중국은 AI 혜택의 포용적 확산과 국제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WAICO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원칙, 모범사례, 규범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촉진자 역할도 지향한다는 점에서 서구권에서는 이를 중국이 미국·G7 중심의 AI 거버넌스 체계와 별도의 제도권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중국 정부는 이 외의 국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 창립국은 ▲아시아 12개국(중국이 공개한 예시 국가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아프리카 10개국 ▲중남미 3개국(쿠바, 브라질, 베네수엘라) ▲유럽 3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으로 추정됨.

² ▲아시아 3개국(베트남, 브루나이, 이란) ▲아프리카 3개국(수단, 탄자니아, 토고) ▲중남미 1개국(도미니카 연방) ▲유럽 1개국(조지아)

³ 각국의 AI 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 AISI)와 정부 지정 AI 안전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체로, 한국, 미국, 영국, EU,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고 있음. 2025년 12월 명칭이 첨단 AI에 관한 측정, 평가 및 과학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Advanced AI Measurement, Evaluation and Science)로 변경됨.

특히 미국은 WAICO가 AI 거버넌스 수립에 초점을 두는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국 중심의 AI·반도체 공급망 연합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의 경쟁 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미국 주도의 AI 기회 선언문(AI Opportunity Statement)¹에 서명한 뒤 7월 WAICO 설립 협정에도 참여한 카자흐스탄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 및 우호국들에 사실상 양자택일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8월 15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WAICO를 비롯한 중국 주도 AI 프레임워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서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¹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팍스 실리카 서밋에서 총 24개 팍스 실리카 참여 주체(한국 포함)와 기타 11개국이 서명함.

영국, AWS·구글·MS·오라클 '금융서비스 핵심 제3자' 지정...클라우드 업체 등도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

In Focus

7월 13일 영국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에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감독을 [개시](#)함.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과 금융건전성감독청(PRA), 금융행위감독청(FCA)¹은 “하나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천 개 금융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 하나의 장애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서비스 기업을 직접 감독 범위에 포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함.

배경

-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2023년 영국 정부는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개정을 통해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업체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024년 11월에는 제3자 업체 감독체계에 관한 최종 규정을 [확정](#)했으며, 2025년 1월 규정이 발효됨.
- 이후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대상이 될 제3자 업체를 선정해 올해 7월 13일부터 감독을 개시한 것.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전반적인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재무부는 “영국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서비스 공급업체”를 ‘핵심 제3자(Critical Third Party, CTP)’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최초로 CTP로 지정되어 7월 13일부터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된 4사는 모두 클라우드 사업자임.

영국 재무부가 지정한 금융서비스 핵심 제3자(CTP)

- 아마존웹서비스 유럽·중동·아프리카 법인 (Amazon Web Services EMEA SARL)
- 구글 클라우드 유럽·중동·아프리카 법인 (Google Cloud EMEA Limited)
-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 법인 (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td)
- 오라클 UK 법인 (Oracle Corporation UK Limited)

이들 기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받게 됨.

CTP가 준수해야 할 의무

- 핵심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식별·평가하고 관리
- 중대 사고 발생 시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와 적시 소통
- 정보 제출 요구 및 테스트에 협조하고 업체별 기타 요구사항 준수

재무부는 향후 CTP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 CTP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BoE, PRA, FCA는 CTP 사업자의 지정 유지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뒤 재무부에 의견을 제시하게 됨.

¹ 금융건전성감독청(PRA)과 금융행위감독청(FCA)은 각각 대상 기관 및 분야를 구분해 금융감독 권한을 행사함. PRA는 은행, 보험사, 대형 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자본 적정성, 유동성 및 리스크 관리 등 건전성 규제를 담당함. FCA는 PRA 규제 대상을 포함한 모든 금융서비스 기업에 대해 서비스 제공 과정의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PRA 규제 대상이 아닌 소규모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도 담당함.

중국 스타트업, 고성능 개방형 AI '키미 K3' 출시...사이버보안 및 정보수집 우려도 제기

7월 17일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AI(Moonshot AI)가 고성능 AI 모델 '키미 K3(Kimi K3)'를 [출시](#)하여 주목받고 있음. 특히 같은 달 27일부터는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형성한 가중치(weight)¹를 공개하는 오픈 웨이트(open weight)²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체 서버에 키미 K3 모델을 배포해 운영하거나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출시 발표문에 따르면 키미 K3는 연산능력의 기반이 되는 매개변수(parameter)가 2조 8000억 개에 달하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100만 토큰³으로 장기·복합(long-horizon)⁴ 코딩과 문서 작성·분석 등의 지식 기반 업무, 추론 분야에 강점이 있음.

반면 앤트로픽의 클로드(Claude), 오픈AI의 GPT 중 주력 모델, 구글의 제미니(Gemini) 등은 일반적으로 모델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모델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운영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한편, 최근 키미 K3뿐만 아니라 딥시크의 'V4 플래시', 알리바바의 '큐원 3.8 맥스'가 출시되는 등 중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성능 AI 모델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음. AI 모델의 API 출력 시 부과되는 비용⁵ 기준으로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와 비교하면 V4 플래시는 약 57분의 1, 큐원 3.8 맥스는 약 8분의 1, 키미 K3는 약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음.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모델에 대한 보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성형 AI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에 활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옵트아웃' 옵션을 제공하지만, 중국의 일부 서비스는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텍스트나 이미지를 복사하고 잘라내기 할 때 임시로 저장하는 '클립보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로이터 통신은 미국 보안 기업이 사이버보안 테스트를 수행하던 중 키미 K3 모델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상태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한 '샌드박스'⁶ 환경을 탈출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함. 소속 연구진은 "키미 K3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데 매우 뛰어나며, 부정행위나 샌드박스를 벗어나는 행동을 억제할 안전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

¹ 입력값의 중요도를 조절하는 매개변수로, 학습을 통해 최적화되며 가중치에 따라 모델이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는지가 결정됨.

² 오픈소스와 폐쇄형의 중간 단계. 모델의 가중치는 공개되지만 학습 데이터, 소스 코드 등은 공개하지 않음. 반면, 오픈소스는 가중치뿐만 아니라 모델 구조, 학습 데이터, 학습 코드 등을 공개함.

³ AI 모델이 텍스트를 다룰 때 쓰는 최소 단위. 하나의 토큰은 단어, 단어의 일부, 숫자, 문장부호 등이 될 수 있으며, 처리 가능한 토큰 수가 많을수록 더 긴 문서와 대화의 맥락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음.

⁴ 하나의 질의·응답으로 해결되는 단기·단일(short-horizon) 작업과 달리, 장기·복합(long-horizon) 작업은 여러 단계의 하위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전 단계의 맥락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함. 이에 최적화되지 않은 모델은 작업 도중 맥락을 잃거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⁵ AI 모델을 사용자의 자체 프로그램에 연동해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사용량 기반 비용(100만 토큰당 기준)이며, 8월 중순 가격 정책 기준임.

⁶ AI가 외부 정보 접근이 차단된 환경에서 보안상의 제한을 우회하지 않고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설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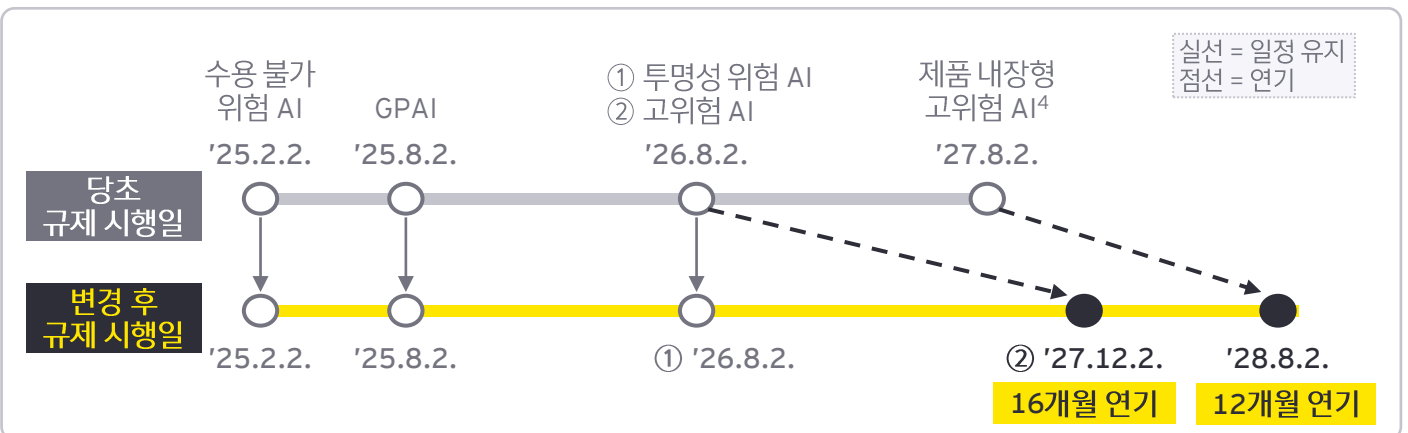
EU, '고위험 AI' 규제 '27년 말 이후로 연기 확정...투명성 의무는 원안대로 8월 시행

7월 27일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AI 옴니버스(AI Omnibus)'¹가 **발효**됨. 이에 따라 지난 5월 7일 EU의 공동 입법기관인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했던 대로 법의 핵심 규제 대상인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이 올해 8월 2일에서 내년 12월 2일로 16개월 연기됨. (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 "EU 입법기구, '인공지능법' 간소화에 합의...중복 규제 제거하고 의무 준수기한 최대 16개월 연장" 참고)

배경

- '24년 8월 1일 발효된 EU 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차등적 규제를 적용함.
 - **수용 불가 위험**: 전면 금지 (예: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 민감한 특성을 기반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AI)
 - **고위험**: 허용하되 엄격히 규제 (예: 도로교통 등 중요 인프라 관리 AI, 신용점수 평가 AI)
 - **제한적(투명성) 위험**: 허용하되 투명성 의무² 등 일정 수준으로 규제 (예: 딥페이크 생성 AI, 챗봇)
 - **최소 위험**: 허용하고 미규제 (대부분의 AI 시스템)
- 한편, 이 법은 생성형 AI 등 **범용 AI(GPAI)**³ 모델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는데, ①모델의 기술적 특성 등을 설명한 문서와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②EU의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③모델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를 요약해 공개할 의무가 있음.
 - GPAI가 고위험 AI 시스템에 통합되거나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AI로 간주됨.
- 그러나 고위험 AI 시스템에 적용될 세부 기술 표준과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연되면서 규제 준수 부담과 시행 시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EU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고위험 AI 관련 의무 적용 시점을 연기한 것.

반면 '제한적(투명성) 위험 AI 시스템' 규제는 5월 공개된 AI 옴니버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8월 2일이 아닌 12월 2일로 시행이 4개월 늦춰질 예정이었으나, 7월 발효된 최종 AI 옴니버스에서는 원안대로 8월 2일부터 시행함.



<AI 옴니버스 발효에 따른 EU 인공지능법 시행 일정 변화>

¹ 디지털 규제 간소화 패키지(Digital Omnibus Package)의 일부로 추진된 인공지능법 개정안

²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AI라는 사실 또는 사용자가 보고 있는 콘텐츠는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표시할 의무

³ 특정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챗봇·검색·코딩·이미지 생성 등 여러 AI 시스템의 기반 모델로 활용될 수 있는 범용(General Purpose) 모델

⁴ 의료기기·기계 등 기존 'EU 제품 안전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

OECD, 세계 최초 양자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책임 있는 양자 기술 개발·활용 위한 공동 원칙 제시

5월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최초로 양자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공동 원칙과 정책 지침을 담은 '[양자 기술에 관한 OECD 권고문](#)(Council Recommendation on Quantum Technologies)'을 채택함.

양자 기술은 기존 산업과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올 미래 전략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동시에 디지털 보안,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여러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OECD 권고문은 양자 컴퓨팅·통신·센싱 등 양자 정보기술과 관련된 정책 이슈에 초점을 맞춰 ▲각국 정부와 양자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적극 관여하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이 고려해야 할 포괄적 원칙을 수립하고 ▲각국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함.

양자 기술 및 시장 동향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2025 양자 정보기술 백서](#)'에 따르면, 글로벌 양자 기술 시장은 '25년 약 18조원에서 연평균 17% 성장해 '35년 약 84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양자 컴퓨팅**: 기존 컴퓨터 대비 비약적으로 빠른 정보처리 및 높은 연산 성능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 소재 연구, 금융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며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양자 통신**: 정보 보안을 극대화하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로, 고전 암호체계가 양자 컴퓨터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금융·국방을 중심으로 보안 전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
- **양자 센싱**: 양자 현상을 이용해 고감도·고정밀 측정을 구현하는 기술로, 국방·항공·우주·정밀 계측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적용이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OECD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책임 있는 양자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공동 원칙

- 민주적 가치, 인권, 자유를 존중하면서 공공 안전과 편익에 기여하는 양자 생태계 혁신 촉진
- 양자 기술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혜택의 확산을 지원하되, 경제 및 국가 안보 위험을 적절히 관리
- 연구개발, 상용화, 국제 협력을 통해 양자 기술 혁신 생태계 육성
- 양자 기술의 개발·배치·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책임성, 신뢰성, 투명성 강화

국가 정책 활용 및 국제 협력 촉진

- 양자 기술의 개발·활용에 따른 기회·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
- 양자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숙련된 융합형 양자 인재를 양성
- 양자 연구 및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해 경쟁력 및 회복탄력성을 갖춘 공급망 구축을 지원
- 이 권고문의 원칙을 구현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국제 협력을 촉진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요국들은 양자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3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하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

올해 1월에는 '제1차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 산학 협력 지구(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035년까지 ▲세계 1위 양자 칩 제조국 달성 ▲양자 인력 1만 명 육성 ▲양자 기업 2천 개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산업화 단계별 로드맵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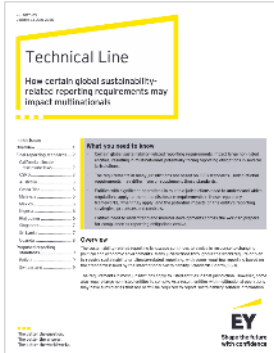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두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자 기술은 인공지능 시대 이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지을 파괴적 혁신 기술”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적 양자 기술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힘.

03

주목할 간행물



EY: Technical Line - How certain global sustainability-related reporting requirements may impact multinationals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속가능성 또는 기후 공시 제도는 대체로 상장기업 대상이지만, 일부 국가·지역은 대규모 비상장기업에도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을 추진 중이므로 해당 국가·지역에 사업장이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EY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EU, 미국 캘리포니아 주, 호주 등 주요 국가·지역별로 금융기관을 제외한 비상장기업에 적용하고 있거나 도입 추진 중인 공시·인증 요구사항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음.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중요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가·지역별로 적용받는 규제와 공시 의무·시기 등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보고 전략·프로세스·통제상의 잠재적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EY: CSRD Barometer 2026



EY가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른 공시 내역을 분석하는 ‘EY CSRD Barometer’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2025 회계연도에 대한 지속가능성 공시 196건을 분석한 결과, CSRD 시행 2년 차를 맞아 공시가한층 성숙해졌다고 평가함.

특히 전년도의 최초 공시와 비교해 공시 분량은 줄어들고 정보의 깊이와 일관성은 개선됨. 이중 중요성¹ 평가도 더욱 정교해졌으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 2 ‘일반 공시(General Disclosures)’ 체계가 정착되는 한편 거의 모든 기업이 ESRS E1 ‘기후변화’, ESRS S1 ‘전 종업원’ 및 ESRS G1 ‘사업행동’이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외부 인증도 사실상 시장의 표준 관행으로 정착함. 분석 대상의 98%가 최소한 제한적 확신(검토) 수준의 인증을 받았으며, 단 1건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 감사인이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단계를 넘어 보다 체계적인 공시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다만 보고서는 앞으로 공시 내용의 일관성 및 사업 전략과의 연계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¹ 기업이 환경과 사람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뜻하는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 관점과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뜻하는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 관점을 각각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둘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함.

담당자 안내

EY한영 Public Policy팀

이동근 부문대표 (파트너)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대표, Public Policy 리더

dongguen.lee@kr.ey.com

Public Policy 뉴스레터 편집팀: 김양희 팀장, 권혜숙 차장, 강태은 과장, 김채원 직원

EY한영 ESG Impact Hub

박재흠 파트너

EY한영 ESG Impact Hub 리더, 감사부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리더

jaeheum.park@kr.ey.com

뉴스레터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품질관리실 회계기준 김동길 파트너 품질관리실 감사기준 및 제도 정연웅 파트너

I 제작 EY한영 Public Policy 팀 (ey.pp.team@kr.ey.com)

I 뉴스레터 구독 신청 담당 EY 파트너 문의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Y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